1996. 12.

개정및폐지조례안심사보고서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개정조례안

총 무 위 원 회

제정및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조 례 명	제안일자	회부일자	상정일자	제안설명자
충주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6. 10. 4	96. 10. 8	제18회임시회 제4차 총무위원회('96. 11. 4) : 유보의결 제20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96. 12. 13)	가정복지과장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6. 12. 6	96. 12. 6	제20회정기회 제4차 총무위원회 (96. 12. 13)	세정과장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	〃	시민생활지원과장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	〃	사회과장

2. 제안설명요지

가. 충주시공설묘지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현재까지의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가 현실에 맞지 않아 적자가 누적됨에 따라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점진적으로 현실화 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인상

ㅇ사용료 : 40,500원 ⇒ 81,000원으로,
ㅇ관리비 : 12,000원 ⇒ 24,000원으로,

○ 사용자의 자격을 '충주시관할구역내에서6월이상주소를가진자'로 규정

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및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으로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개정코자 함.

2) 주요골자

○ 공중위생업소 허가구분 변경 및 수수료 신설

ㅇ이·미용업소, 공중목욕탕, 숙박업 : 허가 → 신고로

ㅇ공중위생업소 수수료 : 현행 수수료를 적용하여 신설

○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 수수료 신설

ㅇ개별공시지가확인서 : 1통당 400원 ⇒ 필지, 연도별 400원으로

ㅇ토지대장기재 발급 : 무료 ⇒ 필지, 연도별 300원으로

ㅇ열람 : 무료 ⇒ 필지, 연도별 200원으로

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 제안이유

○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태기간에 따라서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자치단체조례로 호적과태료 기준을 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2) 주요골자

○ 호적법시행규칙이 1995. 12. 26일 개정됨에 따라 개정전 시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는 호적과태료부과조례는 효력이 없으므로 폐지

라.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융자대상자 확대지원 및 영세민의 소외감을 덜어 주기 위하여 저소득 주민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세대당 융자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융자대상자 확대 (안제3조)

ㅇ자립의욕이 왕성한 생활보호대상자 ⇒ 자립의욕이 왕성한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 장애인 가구주로

○ 세대당 융자한도액 상향 조정 (안제4조)

ㅇ세대당 500만원 ⇒ 세대당 1천만원으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공설묘지 사용료 및 관리비를 100% 이상 조정하였으나, 법인 묘지보다 분양 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누적되는 적자폭을 줄여 나가기 위하여는 앞으로 인상조정이 계속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 사용자의 자격을 '충주시 관할구역내에서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로 강화하여 개정한 것은 위장전입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예고를 거쳐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96. 8. 20)에 따라 수수료 징수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97. 1. 1일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으므로,

○ 현재 공중위생법시행규칙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중위생업소 수수료를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삽입, 조문을 개정하여 시행하고자 함이며, 타 시·군의 공중위생업소허가등조례와 비교한 결과 같은 수준임.

○ 개별공시지가 확인수수료 신설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자가 확인서발급'을 할 때에는 시·군조례로 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발급에 준하여 수수료금액을 정한 것은 적정하며 상위법에 근거하여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호적신고 해태시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호적법시행규칙 제52조의 개정전에는 호적법에 규정된 금액을 상한으로 하여 과태료 처분을 시 읍·면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 '95. 12. 26일자로 개정된 호적법시행규칙에서 이미 과태료 부과기준이 정하여져 있고, 호적사무는 국가위임 사무이므로 대법원에서 정하여진 규정에 따라 호적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므로 자치단체장 임의로 조례를 제정할 수 없으므로 상정된 호적과태료부과징수폐지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라.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개정조례안

○ 자활의욕이 강하면서도 일시적인 재난, 기타사유로 생계 자금이 현저하게 부족한 영세민에게 융자금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 세대당 융자한도액을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사업목적의 조기달성을 돕기 위한 것이지만, 저소득 주민에게는 부담이 크다고 생각됨.

○ 상환조건이 2년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되어 있지만 상환대상자가 저소득이라는 점을 감안, 재정손실을 가져올 우려가 있으므로, 융자희망자가 융자금 상환기간내에 상환이 가능한지 여부를 신중히 심사한 후, 결정되어야 하겠으며, 상정된 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거쳤는 바,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답변요지

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없음

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없음

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없음

라.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질 의〕

○ 생활안정 기금의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한 것은, 충주시 자체 사항인지 아니면 전국적인 사항인지?

☞ 답 변

○ 충주시 자체적인 사항임.

〔질 의〕

○ 융자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보다 융자조건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 답 변

○ 융자 상한금액이 1천만원이며 그이하도 융자가 가능함.

○ 융자조건의 개선으로는 무보증 외에는 제도개선이 불가능하며 무상융자할 경우 기금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수정안 요지

"별 지"

6. 심사결과

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수정안 가결

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원안가결

라.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1. 붙 임

가.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나. 충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라.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 조례명 :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3조 제2항중 "허가받은 자"를 "매장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사용자격) ①묘지는 망인이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관할구역내에 6월미만 거주자
2.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자

제12조의 제목 "(관외거주자의사용료및관리비징수)"를 "(가산금징수)"로 하고, 같은조중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를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자"로 "30%"를 "30퍼센트"로 한다.

[별 표]

관외거주자 가산금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 분 기 준	합 계	사 용 료	관 리 비	가 산 금	비 고
5 재곱미터	105,000원	81,000원	24,000원	합계금액의 30퍼센트	관리비 : 15년간의 관리비임.

〈수정안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3조(사용허가) ①(생 략) ②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현행과같음)	제3조(사용허가) ①(현행과같음) ②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
제5조(사용자의자격) 묘지는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이하 "관외거주자"라 한다)에 대하여도 묘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5조(사용자의자격) 묘지는 충주시 관할구역내에서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 ---------- 관할구역외에 주소를 가진 자와 외국인(이하 "관외거주자"라 한다)에 ----------.	제5조(사용자격) ①묘지는 망인이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6월이상 주소를 가진 자에 한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묘지의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허가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관할구역내에 6월미만 거주자 2. 각종 사고 및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된 사체를 처리하기가 어려운 자
제12조(관외거주자의사용료및관리비징수) 제5조 단서규정에 의한 관외거주자에 대하여는 제10조 제1항의 묘지사용료와 관리비를 30%를 가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현행과같음)	제12조(가산금징수)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자 ---------- 30퍼센트---------.

현 행

[별표]

요지사용료 및 관리비

구분 기준	합 계	사용료	관리비	관 외 거주자 가산금	비 고
평 1.5	원 52,500	원 40,500	원 12,000	합계금액의 30%	관리비 :15년 간의관리비임

개 정 안

[별표]

요지사용료 및 관리비

구분 기준	합 계	사용료	관리비	관 외 거주자 가산금	비 고
5제곱미터	원 105,000	원 81,000	원 24,000	합계금액의 30퍼센트	관리비 :15년 간의관리비임

수 정 안

[별표]

요지사용료 및 관리비

구분 기준	합 계	사용료	관리비	가산금	비 고
5제곱미터	원 105,000	원 81,000	원 24,000	합계금액의 30 퍼센트	관리비 :15년 간의관리비임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공설묘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중 "충주시 관할구역내에 주소를 가진자에"를 "충주시 관할구역내에서 6월이상 주소를 가진자에"로 한다.

[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 표]

구분 / 기준	합 계	사용료	관리비	관외거주자 가 산 금	비 고
5 제곱미터	원 105,000	원 81,000	원 24,000	합계금액의 30퍼센트	관리비:15년간의 관리비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계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계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 증 명 등 의 수 수 료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1. 증 명			
가. 인감에 관한 증명			
1) 인감증명	1통	400원	
2) 인감의 개인신고	1통	300원	일제신고등외
나. 본적,주소,신상에 관한 증명			
1) 부양사실 증명	1통	400원	
다. 영업에 관한 증명			
1) 농가,비농가	1통	350원	
라.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납세필 및 등록필	1통	400원	
2) 수출실적	1통	400원	
3) 분배농지상환 완료	1통	350원	
4) 공장등록 증명	1통	400원	
5) 실수요자 증명	1통	350원	
6) 원자재(시설세공업요소)소요량 증명			
가) 가소요량	1통	4,000원	
나) 확정소요량	1통	1,500원	
7) 시설보유 증명	1통	500원	
8) (식품환경)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통	500원	
9) 의료기관,약국(휴폐업)사실 증명	1통	800원	
마. 정부 또는 자치단체의 처분 또는 구역내의 사실에 관한 증명 및 열람			
1) 미분배농지	1통	400원	
2) 공부의 등초본 교부			
가) 대장문서	1통	400원	
나) 토지도면	1통	400원	
다) 건물도면	1통	4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3) 공부열람			
가) 기 본 료	시 간 당	100원	
나) 초 과 료	10분당	100원	
4) 인·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50원	
바. 도시계획등에 관한 증명			
1)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건축선 측량	1필지	5,000원	
2) 도로구축의 경계선,계획선 또는 건축선 도면의 등본교부	1통	400원	
3) 환지(예정지 지정) 증명	1통	600원	
4) 건축부지	1필지	300원	
5) 환지예정지 분할	1필지	400원	
6) 환지예정지에 대한 종전토지 분할	1필지	400원	
7) 환지예정지 변경 신청	1필지	400원	
8) 표준주택 설계도면	1통	1,500원	
9) 채비지 분할신청	1통	400원	
10) 토지대금 완납증명	1통	400원	
11)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획결정증명	1통	300원	
사.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납세완납증명 또는 미(비)과세 증명	1통	400원	
2) 세목별 과세증명	1통	400원	
3) 세목별 납세증명	1통	400원	
4) 징수유예증명	1통	400원	
아. 회계에 관한 증명			
1) 거래액(물품공급실적)증명	1통	400원	
2) 하자보증금 납부(예치)증명	1통	400원	
3) 원천징수용 제증명	1통	400원	
4) 공사준공,기술용역 및 공사도급 하자보증금 보관확인서	1통	4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5) 납품 또는 공사사실 증명	1통	400원	
자. 주택에 관한 증명			
1) 철거사실 증명	1통	400원	
2) 공(시)영주택 분양금 납부증명	1통	400원	
차. 기타증명			
1) 기타 시설공부등에 의해 발급하는 증명	1통	400원	
2. 인가,허가,신청,등록,지정,확인등			
가. 일반행정관계			
1) 인·허가,등록,지정등의 대장열람	1건	100원	
2) 행정서사업 허가증 재교부 신청	1건	500원	
3)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허가신청			
가) 신 규	1건	800원	
나) 계 속	1건	400원	
4) 토지등급설정 심사청구 신청	1건	800원	
5) 기타 각종 인·허가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원	
나. 문화공보관계			
1) 공연장 설치허가			
가) 가설공연장	1건	4,000원	
나) 임시공연장	1건	800원	
2) 공연장 양수신고	1건	800원	
3) 공연장 허가사항 변경허가			
가) 가설공연장	1건	2,500원	
나) 임시공연장	1건	800원	
다. 보건사회관계			
1) 마약판매서 및 구입용지 교부신청	1건	150원	
2) 이·미용업소 신고증 재교부	1건	800원	
3) 공중목욕탕 신고증 재교부	1건	8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4) 숙박업 신고증 재교부	1건	800원	
5) 사설묘지,사설화장장 및 납골당 허가필증 재교부	1건	800원	
6) 묘지개장 허가신청	1건	800원	
7) 유기장업 허가증 재교부	1건	800원	
8) 의료기관 개설허가			
가) 종합병원	1건	70,000원	
나) 병 원 급	1건	50,000원	
다) 의 원 급	1건	30,000원	
9) 의료기관 개설장소의 이전 또는 허가사항의 변경	1건	20,000원	
10)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	1건	10,000원	
11) 유기장업 허가			신 설
가) 컴퓨터게임장	1건	25,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1건	50,000원	
다) 기타유기장업	1건	25,000원	
12) 유기장업 변경허가			신 설
가) 컴퓨터게임장	1건	13,000원	
나) 종합유원시설업	1건	25,000원	
다) 기타유기장업	1건	13,000원	
13) 숙 박 업 신 고			신 설
가) 호 텔 업	1건	90,000원	
나) 콘도미니엄업	1건	90,000원	
다) 여 관 업	1건	30,000원	
라) 여 인 숙 업	1건	8,000원	
14) 숙 박 업 변경신고			신 설
가) 호 텔 업	1건	45,0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나) 콘도미니엄업	1건	45,000원	
다) 여 관 업	1건	15,000원	
라) 여 인 숙 업	1건	4,000원	
15) 목욕장업 신고			신 설
가) 공동탕업	1건	10,000원	
나) 가족탕업	1건	10,000원	
다) 한증막업	1건	10,000원	
라) 사우나탕업	1건	50,000원	
마) 터키탕업	1건	50,000원	
바) 복합목욕탕업	1건	50,000원	
16) 목욕장업 변경신고			신 설
가) 공동탕업	1건	5,000원	
나) 가족탕업	1건	5,000원	
다) 한증막업	1건	5,000원	
라) 사우나탕업	1건	25,000원	
마) 터키탕업	1건	25,000원	
바) 복합목욕탕업	1건	25,000원	
17) 이·미용업 신고			신 설
가) 이 용 업	1건	10,000원	
나) 미 용 업	1건	10,000원	
18) 이·미용업 변경신고			신 설
가) 이 용 업	1건	5,000원	
나) 미 용 업	1건	5,000원	
19) 위생관련업 신고			신 설
가) 세 탁 업	1건	3,500원	
나) 위생관리용역업	1건	3,500원	
다) 위생처리업	1건	3,5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20) 위생관련업 변경신고			신 설
가) 세 탁 업	1건	2,300원	
나) 위생관리용역업	1건	2,300원	
다) 위생처리업	1건	2,300원	
21) 위생용품제조업 신고			신 설
가) 세척제 제조업	1건	15,000원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3,500원	
다) 장난감제조업	1건	3,500원	
22) 위생용품제조업 변경신고			신 설
가) 세척제 제조업	1건	8,000원	
나) 기타위생용품제조업	1건	2,300원	
다) 장난감제조업	1건	2,300원	
라. 농수산관계			
1) 가축인공수정소 등록사항 변경신청	1통	800원	
2) 축사 표준설계도서 발급신청	1매	300원	
3) 농수산물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	1건	1,500원	
4) 가축자가사육 사실확인원	1통	500원	
마. 상공·동력자원관계			
1) 공장입지 지정승인	1건	1,500원	
바. 건설운수관계			
1) 도시계획사업 허가신청	1건	1,500원	
2) 공영주택의 양수·양도 승인신청	1건	500원	
3) 공(시)영주택(증축·개축) 승인	1건	800원	
4)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변경허가 신청	1건	800원	
5) 하천(공유수면)점용(물량증가) 명의변경 허가	1건	1,200원	
6) 하천(공유수면)허가 변경사항	1건	800원	

구 분	기 준	수 수 료	비 고
7) 재식 및 농업용하천(공유수면) 점용허가	1건	1,500원	
8) 도선장 설치허가 신청	1건	1,500원	
9) 채비지 명의변경 신청	1건	800원	
10) 토지사용(채비지) 승락서	1건	800원	
11) 채비지 확인서 (대부매수,주소변경,소유권변경)	1건	800원	
12) 채비지소유권 확인원	1건	800원	
13) 권리변경(재개발지구행위) 허가신청	1건	800원	
1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확인			신 설
가) 개별공시지가확인서 발급	1필지(연도별)	400원	
나) 토지대장에 기재 발급	1필지(연도별)	300원	
다) 열람	1필지(연도별)	200원	

충주시조례 제 호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충주시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조례 제 호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개정조례안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영세민"을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제3조제1항본문중 "생활보호대상자중 새마을정신이 강하고"를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장애인 가구주중"으로 하고, 같은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규모 상업을 위한 자금

제4조제1항중 "500만원"을 "1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를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심사위원회"로 한다.

제8조중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를 "충주시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관리특별회계"로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주시영세민생활안정기금융자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융자를 받은것으로 본다.